

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
새로운 대한민국을
만듭니다

우리 생활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



- 공직자 등의 직무상 지위 권한을 이용한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- 공직자 등에게 민원 등 특정행위 요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기합니다.
- 직무관련성,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 등에게 불필요한 금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위법한 부정청탁, 금품수수는 소관기관 등에 신고합니다.
- 공직자 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동일한 부정청탁을 2회 이상 받으면 소속기관에 신고합니다.

이런 것들이 궁금하셨죠?

청탁금지법 FAQ



① 모든 국민이 적용대상인가요?

모든 국민이 적용대상은 아닙니다. 다만,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?

② 공직자 등인 친구와 3만원이 넘는 식사를 하고 제가 계산하면 반드시 처벌인가요?

아닙니다. 직무 관련성이 없는 친구와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3만원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습니다. 이는 선물, 경조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.

③ 본인이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?

아닙니다. 청탁금지법은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. 다만, 공공기관과 국민 간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.

국민권익위원회

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
TEL:[044]200-7619 FAX:[044]200-7939
www.acrc.go.kr
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안내



청렴 대한민국!
새롭게 시작합니다

청렴 대한민국, 새로운 변화가 시작 됩니다



국민권익위원회

청탁금지법은 왜 필요할까요?



「청탁금지법」은 어느 곳, 누구에게나 깨끗하고,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

-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(법 제1조)

누구에게 적용될까요?



공직자등

- 국가·지방공무원, 공직유관단체·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
-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
-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

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(공무수행사인)

- 공무수행사인의 유형(4개) △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
△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·위탁받은 자 △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△심의·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

일반국민

-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

이제 혈연, 지연, 학연 청탁이 통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

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「불법 인·허가, 면허처리」 등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면 안됩니다. (법 제5조제1항)

부정청탁의 행위유형 14가지

- 입학·성적·수행평가 등 학교 업무의 처리·조작
- 불법 인허가·면허 등 처리
- 채용·승진 등 인사에 개입
-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
- 공공기관이 생산·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
- 각종 평가·판정 업무 개입
-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에 선정·탈락되도록 개입
- 수상·포상 등의 선정·탈락에 개입
- 보조금 등의 배정·지원, 투자 등에 개입
- 사건의 수사·재판 등에 개입
-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
- 행정처분·형벌부과의 감경·면제
- 입찰·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

예외사항

-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는 △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, △공개적인 특정 행위 요구, △공공기관 업무 관련 확인·문의 등 적법한 절차나 행위를 통해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것 등입니다.

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사회, 신뢰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

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. (법 제8조제5항)

이런 경우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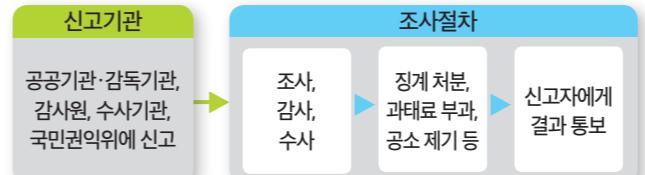
-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
-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
-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
-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

예외사항

-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은 △친족이 제공하는 금품, △오랜 친구가 질병,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, △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 해당됩니다.

‘청렴 대한민국’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

신고·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

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도 확실하게 책임집니다!

- 불이익조치 금지
- 원상회복 조치
-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
- 책임감면

유형	위반행위	제재수준
부정청탁	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	과태료
	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	
금품 등 수수	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	형벌
	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자	
	1회 100만원,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자	형벌

식사 3만원, 선물 5만원, 경조사비 10만원,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

3·5·10 예외규정은 무슨 의미인가요?

☞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, 어떤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됩니다.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, 사고·의례, 부조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.



음식물·선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 관련)

- **음식물** :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
• 가액범위 3만원
- **선물** :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
• 가액범위 5만원
- **경조사비** : 축의금,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·조화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
• 가액범위 10만원